부산직할시사하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4. 12. 22

총무사회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4. 12. 19 사하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1994. 12. 19

다. 상 정 일 자 : 제38회 정기회 제4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

('94. 12. 2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곽 소 득)

가. 제안이유

부산화력발전소의 지원금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감천 1, 2동)에 대한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목적(안 제1조)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영

○지원사업(안 제2조) : "지원사업"이라 함은 발전소 주변지역 (감천1, 2동) 주민의 소득증대 사업과 공공시설 사업을 말함.

○세입(안 제3조) : 세입은 부산화력발전소에서 매년 지원되는 지원금으로 하고, 세출은 소득증대사업 및 공공시설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함.

○이월사용(안 제4조) :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함.

○준용(안 제5조) :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름.

○시행규칙(안 제6조) :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장이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장기 계속 사업이며, 지원금은 특정사업에 투자하는 사업비로서 지방재정법 제5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로 관리 운영하여야 하는 것이 정당하므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